

말라위 (Malawi)

◎ 주요 변동사항

| 구 분 | 2017 | 2019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|
| 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 |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민간부문 근로자 | 5인 초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민간부문 근로자 및 2017년 7월 1일 기준 35세 이하의 공공부문 근로자 | 적용대상 확대 |
| 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 | 5% / 15% / 10% | 5% / 15% / 10% | - |
| 연금수급 요건 | 50세 또는 해외 영구이주 및 가입 기간 20년 충족 시 연령제한 없음 | 50세 또는 해외 영구이주 및 가입 기간 20년 충족 시 연령제한 없음 | - |
| 노령연금 지급률 | 근로자 및 사용자 총 납입보험료 + 가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보험 구매, 단계적 인출 또는 일정 한도 내에서의 일시금 인출 선택 가능 | 근로자 및 사용자 총 납입보험료 + 가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보험 구매, 단계적 인출 또는 일정 한도 내에서의 일시금 인출 선택 가능 | - |
| 일시금 | 근로자 총 납부 보험료 + 가산 이자 - 이전 인출액 | 근로자 총 납부 보험료 + 가산 이자 - 이전 인출액 | - |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2011년(연금법)

2 제도형태

- 의무개인계좌제도(Mandatory individual account system)
- ※ 2011년 제정된 연금법에는 의무개인계좌제도 시행 내용을 담고 있으며, 현재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. 동 법령의 조항이 본 요약본에 기술되어 있음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5인 초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민간부문 근로자 및 2017년 7월 1일 기준 35세 이하의 공공부문 근로자
- 임의적용 : 자영자

- 적용제외 :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민간부문 근로자로서 월 소득이 10,000 kwacha 미만인 경우, 가사노동자, 계절성 근로자 및 임차인
- 특별제도 :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 일부 공공부문

4 재원조달

- 근로자 : 월 소득의 5%(추가 납입 가능)
- 자영자 : 월 소득의 15%(추가 납입 가능)
- 사용자 : 월임금지급액의 10%(추가 납입 가능)
- 정부 : 없음, 사용자로서 기여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
 - 50세 또는 해외 영구이주 및 가입기간 20년 충족 시 연령제한 없음
 - 고용관계 종료(퇴직) 필수
 - 조기인출 : 실업상태이고 최근 6개월 내에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을 경우 가능
- 장애연금
 - 장애급여
 - 완전 근로능력 상실로 판정
 - 의사가 장애여부를 판정해야 함
- 유족연금
 - 유족급여
 - 가입자 사망 시 지명된 유족에게 지급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
 - 가입자는 1)연금보험 구매, 2)단계적 인출 또는 3)일정 한도 내에서의 일시금 인출(퇴직 시

가입자 연령에 근거, 50세에 5,400,000 kwacha에서 70세에 3,453,000 kwacha 사이) 중에 선택 가능

- 해외 영구이주 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납입보험료 + 가산이자 - 이전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일시금 지급
- 조기인출 : 계좌잔고가 500,000 kwacha 이하일 경우 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납입 보험료 + 가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인출 가능, 잔액이 500,000 kwacha를 초과할 경우 근로자의 총 납입 보험료 + 가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출 가능

○ 장애연금

- 장애급여
 - 계좌잔고를 일시금 또는 연금보험 형태로 지급

○ 유족연금

- 유족급여
 - 계좌잔고를 일시금 또는 연금보험 형태로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○ 말라위중앙은행(Reserve Bank of Malawi)

- 연금운용사 자격 부여 및 금융 감독 제공
 - 자격을 보유한 연금운용사만 의무개인계좌를 운용할 수 있음

<2019년 ISSA 자료>